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합556070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병덕

피 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장보순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담당변호사 여광수, 유은혜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1,500,000원 및 그 중 100,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나머지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30.부터 각 2021.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11,050,000원 및 그 중

70,3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140,7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30.부터 각 2023. 5.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아파트 제13층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을 직접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0. 1.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2020. 1. 5.경 가계약금 2,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20. 1. 7.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를 2,01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

1차 계약금(5%)	2차 계약금(10%)	1차 중도금(10%)	2차 중도금(10%)	잔금
2020. 1. 7.	2020. 3. 15.	2020. 4. 30.	2020. 7. 30.	입주지정일
100,500,000	201,000,000	201,000,000	201,000,000	1,306,500,000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을(원고)은 상기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본 공급계약서에 명시한 지정은행계좌에 본인명의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갑(주식회사 F1)은 각 납부일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갑 등은 을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공급금액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④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총 공급금액의 15%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이미 납부한 공급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20. 1. 7.경 98,500,000원, 2020. 3. 30.경 20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계약해제통보 등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1차 중도금 납부기일인 2020. 4. 30.까지 1차 중도금 201,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20. 5.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원고가 2차 중도금 납부기일인 2020. 7. 30.까지도 1차 중도금 201,000,000원 및 2차 중도금 201,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21. 1. 4.경 원고에게, ‘1, 2차 중도금이 미납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며, 2021. 1. 15.까지 1, 2차 중도금 및 연체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2021. 1. 15.까지 1,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21. 6. 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미 2차례 지급 최고를 하였고, 전매를 이유로 3차례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해주었음에도, 원고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21. 6. 6.까지도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동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제통보서를 보냈다. 위 각 통보서는 발송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F 역시 2021. 6. 10.경 ‘2021. 6. 16.까지 미지급 분양대금(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공급금액의 15%가 위약금으로 물취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고, 2021. 6. 24.경 재차 ‘2021. 7. 8.까지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공급금액의 15%가 위약금으로 물취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원고가 2021. 7. 8.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F은 2021. 7.

8.경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제되었고 동조 제4항에 따라 총 공급금액의 15%(301,500,000원2))를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원상회복청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직접 담당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G)가 이를 승인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실질적 사용자에게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전매조건부 계약이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의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의무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원고가 얻을 수 있게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해주지 못하였을뿐더러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301,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손해배상청구)

1)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실제로는 분양계약상의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계약금만 납부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전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몰취한 계약금 30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만약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전매조건부가 아니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C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기지급 계약금 30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D 아파트 관련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던 H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 대표인 G의 지휘·감독 아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물취된 계약금 30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전매’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피고 회사가 별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를 보장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전매조건부 계약이라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여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가) 피고 C이 원고에게 전매를 약속한 것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 C의 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가 아니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D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위 아파트가 전매가능하다는 광고를 한 사실, 피고 C이 202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2020. 1. 13.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구매자 원고) 구매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2021. 1~2.경 전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판매자 피고 C) 차장은 이행하겠음을 약속합니다.”라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약속한 것을 넘어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전매조건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여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회사가 중도금 지급기일 전 전매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전매조건부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분양계약서 하단에는 “확인사항: 본 계약서 외에 타 방법의 계약서 외 약정서, 기타 등에 대한 일체의 계약행위는 무효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증인 H은 피고 회사 대표인 G이 처음 원고가 분양상담을 받을 때에는 현장에 있었지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교부할 때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전매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고하였고, G 역시 이를 승인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 H이 한 다른 진술[‘G 회장님이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녹취서 16면)’, ‘이자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준다고 하였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녹취서 17면).’, ‘G와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 이 계약을 원고가 파기(해제)할 수 있거나 무효로 되는 것인지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다(녹취서 34면).’]에 비추어볼 때, 위 G의 “승인”은 피고 회사 측에서 책임지고 전매를 하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전매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중도금 지급기한 및 연체료의 적용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해준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은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20. 7. 30.로부터 약 1년 뒤인 2021. 7.

8.경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기지급 계약금 몰취)하지 않았다.

3) 피고 회사가 한 분양광고는 D 아파트가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라는 것이지 피고 회사가 전매를 확약해준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전매조건부”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전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인지, 전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을 하는 계약인지 등)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원고가 ‘조건부 계약체결’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 사건 분양계약 외 피고 회사가 전매해주기로 하는 별도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을 후자로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전매의무 이행기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전매하여주기로 하였는지, 전매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등)도 명확하지 않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부

피고 C이 2020. 1.경 분양계약의 체결을 고민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2020. 1. 13.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구매자 원고) 구매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2021. 1~2.경 전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판매자 피고 C) 차장은 이행하겠음을 약속합니다.”라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이 분양대금보다 고액에 전매를 해주지 못하여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계약금만 납부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전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2019. 10. 15.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3)와 D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C은 H의 제안으로 D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③ H은 2020. 1. 30.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실, ④ I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H 측(H, 피고 C 등)이 분양한 호실 전부에 대하여 계약당 38,500,000원의 수수료를 J에게 지급하였고, H이 I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피고 C 등에게 분배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D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피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 C은 D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대행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시에도 피고 회사를 대행하여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확약하였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인 G은 피고 C이 원고와 분양 관련 상담을 할 때에 현장에 있었고, 증인 H은 G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던바, G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전매를 확약하여

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H에게 원고의 전매를 위하여 중도금 지급기한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G은 H에게 ‘분양광고문자를 어떻게 보낼지 만들어보라’고 한 뒤 그 문구를 확인하는 등 D 아파트의 분양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4) H은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G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I이 피고 회사와 구분되는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G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 동일하고,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H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J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1)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물취 당한 기지급 계약금 301,500,000원이 된다.

2) 한편,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실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짧은 기간 내에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판단 하에 분양계약 체결에 나아갔어야 함에도 피고 C의 전매차익 보장이라는 약속에 피고 회사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선불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301,500,000원 및 그 중 100,5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20. 1. 7.부터, 나머지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2020. 3.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21. 9. 27.까지는 민법상 연 5%의,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11,050,000원(= 301,500,000원 × 70%) 및 그 중 70,350,000원(= 100,500,000원 × 70%)에 대하여는 위 2020. 1. 7.부터, 나머지 140,700,000원(= 201,000,000원 × 70%)에 대하여는 위 2020. 3. 30.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최윤영, 판사 김수현

1) 피고 회사로부터 시행위탁을 받은 자이다.

2) = 총 공급금액 2,010,000,000원 × 15%

3) 이후 'K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4)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기각되나 원고가 청구한 원금액 전부가 인용되므로, 피고 C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